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일, 최민희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민희의원)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 변경(방미 통위 → 과기정통부)

○ 타법에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대응의 효율성과 실질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으나, 행정청을 권한의 주체로 하고 이관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해킹 등 침해사고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를 담당하고 일반 이용자 보호 평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